



나라재정 보기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7 2022
Vol. 67

FIS 인사이트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재정칼럼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제
(Policy Agenda)

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

조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CONTENTS

www.fis.kr

2022. July
Vol. 67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261

제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04 FIS 인사이드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0 재정칼럼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김명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제
(Policy Agenda)
김상봉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4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28 키워드 재정
민생안정(경제관계장관회의)

32 해외재정동향
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 보고서
「Taxing Wages」



40 이달의 재정 이야기
우리말 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간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4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재정통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단상들

50 재정학자의 진단과 처방
조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56 재정사상의 변천
현대 거시경제학의 정립자
케인스의 재정이론

62 재정 캘린더

64 재정데이터 공개

67 애독자 코너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와 활용을 위한 시사점

김선옥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sokim@kpfis.or.kr)



2022년 5월 10일 청와대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개방된 청와대는 인왕산 일대의 약 25만㎡ 규모의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브리핑룸으로 알려진 춘추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본관, 대통령관저, 상춘재 등 해당 토지에 건축된 건물들 일체가 포함되었다. 청와대 개방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는 분석 결과들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개방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공개·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이면서 동시에 역사를 담은 문화재산으로 보존·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함을 알리는 사례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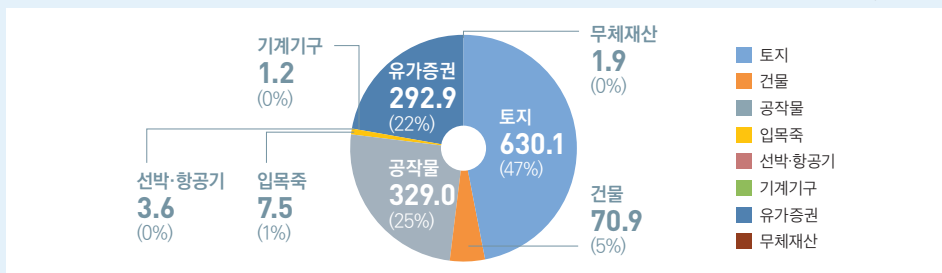
국가는 재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보호·보존하기도 하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대여·임대 등 활용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국가의 역할에 따라 공익적인 역할, 재정수입 확충 역할 등 보다 다각적이며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제도 변화를 통한 국유재산 활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국유재산 현황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고, 협의로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5조에 정한 대상을 말한다¹. 2021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337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로 전체 국유재산의 47%인 630조원 규모이며, 면적으로는 전체 국토의 25%인 25,355㎢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외에 건물, 공작물, 유가증권 등이 국유재산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1〉 국유재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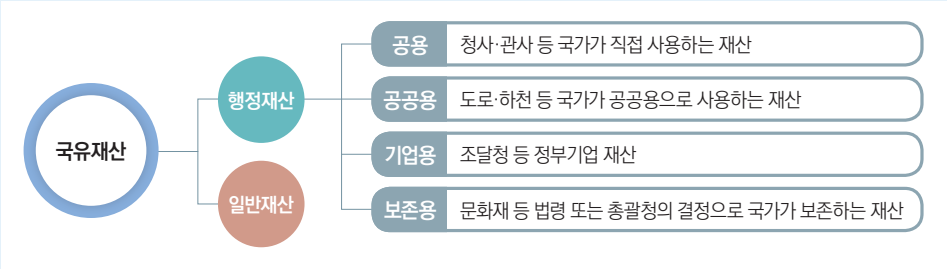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2).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¹ 우리나라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정의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은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과 같이 국가가 그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모든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재산이 약 74.8%, 일반재산이 약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은 일반재산 또는 행정재산 중 용도가 변경·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은 전체의 약 3.1% 수준이다.

〈그림 2〉 국유재산의 구분



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정수입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데, 토지, 건물, 자산 등을 매각하거나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통해 거둬들이는 대여료 등이 대표적이며,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 거둬들이는 입장료 수입 등 부가적인 수입도 있다. 2021년 기준, 국유재산을 통해 마련한 세외수입 규모는 4.4조원으로 토지 등의 매각을 통한 수입이 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여료, 변상금 수입 등이 있다.

〈표 1〉 국유재산을 통한 세외수입 추이

(단위: 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각대	39,362	56,186	39,469	28,196	28,478	29,625	36,565
- 토지, 건물 등 ¹⁾	22,950	26,105	24,444	20,577	20,535	21,955	18,123
- 기타 고정자산 ²⁾	3,094	160	218	106	578	220	174
- 재고자산 ³⁾	13,315	29,918	14,803	7,509	7,363	7,447	18,265
- 유동자산 ⁴⁾	3	3	4	4	2	3	4
변상금 ⁵⁾	346	430	372	453	760	668	538
대여료 ⁶⁾	2,557	7,185	6,561	9,058	7,997	7,730	7,094
합계	42,264	63,801	46,403	37,707	37,234	38,022	44,197

주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임목죽,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 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양곡, 원자재, 비축물자 등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 연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 513목)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결산기준

국유재산의 기능과 관리정책 변화

국유재산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공재적 기능, 환경재로서의 기능, 비축자원의 기능, 재정수입원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며, 당시의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관련 정책이 변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세 차례의 큰 정책 방향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 ① 국가재건 초기 재정보전을 위한 처분정책에서, 이후 ② 미래세대를 위한 비축으로 변화, 그리고 ③ 1994년 이후 적극적 개발과 활용으로 변화했다.

〈그림 3〉 국유재산의 기능



자료: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www.k-pis.go.kr)」

먼저 정부수립 초기부터 1976년까지 기간은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국유지를 처분한 시기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했으며, 특히 경제개발계획 추진의 재원으로 국유지 매각대금이 사용되었다. 이후 처분 위주의 관리정책에 따른 국유재산 감소와 경제발전에 따른 충분한 조세수입 여건이 마련되면서 1977년부터 1993년까지는 유지 및 보존정책으로 변화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유재산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4년에 신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간 유휴지로 방치되거나 일반인에 의해 무단점유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수입 기능 확대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고,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활용 및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했다.

〈표 2〉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

관리정책	연도	관리기관	주요 내용
① 처분 위주 (재정수요충당)	1976년 이전	관재청, 재무부(관재국), 국세청	- (1949~1964년) 산업부흥 국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귀속재산 매각, 정부수립 초기의 재정수입 부족분 충당 - (1962~1975년) 경제개발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유지 매각
↓			
② 소극적 관리 (유지·보전)	1977 ~1993년	재무부(지자체 위임)	- (1977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도 - 국유지의 보존관리위주의 정책
↓			
③ 적극적 관리 (확대·활용)	1994년 이후	재무부 → 기획재정부 (지자체 위임, KAMCO· LH 위탁)	- (1994년) 신탁개발제도 도입,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 (2006년 12월 31일 폐지) - (2004년) 위탁개발제도 도입 - (2011년) 민간참여개발제도 도입 - (201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자료: 기획재정부, (2010). 「국유재산 업무편람」을 바탕으로 재정리

최근의 국유재산 활용 정책과 시사점

최근 국유재산정책은 국가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수행에 대응하여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적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확장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고, 납부유예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국유지 개발로 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년임대주택, 생활 SOC, 창업지원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이 복합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개발방식²으로 16개 사업지에 공공주택용지, 혁신성장공간 등을 공급하는 대규모 유희 국유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³.

최근에는 위탁개발방식을 통한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민간의 자본 또는 개발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중앙-민간-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유지 개발방식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한 복합개발 모델 개발 등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는 2011년도 도입 이후 개발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2021년도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 11건 중 3건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기금개발(5건 계획 대비 2건)과 위탁개발(6건 계획 대비 1건)로 추진된 것이었고, 신탁개발과 민간참여개발은 계획 및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국유재산법」상 개발

대상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제한되는 점, 국가는 자본금 30% 이내의 현금출자만 가능한 점, 대부로 산정이 고정인 점 등 까다로운 현행 제도는 민간의 개발 참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수익성 담보와 까다로운 근거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⁴.

〈표 3〉 정부의 「민간참여개발」 제도 개선방향

	현행	개선
① 대부 기간 확대	• 최초 30년 이내 + 1회 연장(20년 범위 내)	• 최장 50년까지 확대
② 개발 가능 재산범위 확대	• 기재부 소관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	• 전체 일반재산,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재산
③ 목적회사(SPC) 설립형태 다양화	• PEV	• PEV, PEITs, REF 등
④ 공공출자 확대	• 국가는 현금출자만 가능(자본금 30% 이내)	• 국가의 현금출자 허용, 출자한도 확대(50% 미만)
⑤ 대부로 산정 유연화	• 재산가액의 5%	• 매출액 연동 등 다양한 대부로 산정방식 허용
⑥ 사업리스크 완화	• 제도 미비	• 필요시 사업협약 변경, 제3자 양도 등 허용

자료: 기획재정부,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2021.8.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은 관리정책의 방향에 따라 기능별 중요도를 달리하며 변화해 왔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는 정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재정 여력의 확보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수입원으로서 국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난 3월 말 발표된 ‘2023년 예산편성의 방향’에서는 국유재산의 개발·활용·매각을 확대하여 신규재원을 마련하고 재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재정혁신의 한 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⁵, 특히 민간에 대한 국유재산 투자 기회 활성화를 그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과 함께, 민간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2010). 「국유재산 업무편람」.
- 대한민국정부. (2022). 「2021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심지수·문새하. (2021). 「국유지 관리와 활용사례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www.k-pis.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² 국유재산 개발방식으로 ① 기금개발 ② 신탁개발 ③ 위탁개발 ④ 민간참여개발 등 「국유재산법」상 네 가지가 있다.

³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보도자료(2022.3.29.)

⁴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국유재산법」 정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2022년도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2년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6.17.)

⁵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보도자료(2022.3.29.)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김명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토지이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으로,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은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공유지도 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그 이외의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국유지(2018년도 기준으로 전 국토 면적의 약 25.17%)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유지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정책은 1976년 이전, 1976~1994년, 1994년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처분위주의 정책(1945~1976년)에서 유지·보전 위주의 정책(1977~1993년)을 거쳐, 국유지 확대·활용 정책(1994년 이후)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단일 필지에서 건축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최근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는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계획으로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 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 할 자산이므로 국유지의 총량은 유지한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유지 활용을 통해 경제활력의 회복도 지원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국유지가 활용되어야 하며,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 공간의 확대 등 공동체를 위한 공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로의 활용과, 전국 어디서나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 또는 도시숲이나 정원으로 활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제도개선방안도 있다.

첫째, 다양한 활용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위탁개발 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즉, 국유재산법상의 위탁개발, 기금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이외의 개발방식도 필요하고, 4개 개발방식의 변형도 필요하다. 민

간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고려하다 보면, 획일적인 개발방식을 고집할 수만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국유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의 공익성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성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의 변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유지와 민간의 자본을 결합하고 개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의 대부기간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민간 자본의 적극 활용을 위해 리츠를 통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행정재산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체 국유지의 3% 정도에 불과한 일반재산으로 활용이 국한될 경우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유희 및 저이용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용도 평가 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도폐지 과정에서는 행정재산을 소유한 부처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관련 부처와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의 행정재산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부처가 소유한 행정재산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미활용·저이용 국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의 제도화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유지 보전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유지 활용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도시계획적 제약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지자체 단위로 전체 국유지의 장기적 활용방향을 정하고, 도시계획적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유지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동시에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협상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필지별 활용보다는 인접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계획 변경과 이때 수반되는 공공기여의 수준 등을 놓고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넷째,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의 보장이다.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발행위에는 다양한 도시계획적 과정과 인허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한의 대부분은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협조와 승인이 없는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어떠한 도시기능과 시설이 필요한지는 시민과의 접촉면이 가장 넓은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국유지의 경우 특정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와 시설에 맞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원하는 기능과 시설을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거나, 인접한 국유지와 공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협력모델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획재정부의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이다. 일반재산의 관리에서 벗어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행정재산인 상태에서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소유의 국유지의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기금과 특별회계 소유 국유지를 포함하여 국유지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활용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공간 DB가 구축될 때 효율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활용을 위한 법령의 개선 및 정책 수립, 국유지 전체에 대한 운용과 관리 강화,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의 활용 확대, 중장기적인 국유지 수급계획 수립 등 총괄 조정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국유지 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농촌형 국유지 활용모델의 개발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국유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과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특성이 있다. 계획 없이 함부로 개발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활용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제 (Policy Agenda)

김상봉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는 해방 이후 적산농지 불하, 대대적인 토지개량화와 소유권 정리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은 국가 및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 및 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변화했고, 이후 다양한 시도를 모색 중에 있다.

국유재산의 정책변화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행정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변화는 거듭되어 왔다. 국유재산 관리에서 국유지 무단점거, 유희지 장기간 방치, 위임·위탁기관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미흡은 국유지 관리정책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다. 2013년에는 국유재산의 활용제고와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식재산 관리개선, 행정재산 관리강화, 비축토지 및 공무원 주거재산의 재정의, 지자체와의 상호점유 해소방안 등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처분 위주의 답습과 중앙부처장의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재산으로서가 아닌 부처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른바 부처이기주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한계, 관계법령 및 제도의 정비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정책과 행정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유지 및 국유재산은 공공재로서 공익성 확보와 그 실현에 항상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사회 초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국유지 및 국유재산 정책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 공공재이자 공익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신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세대의 국가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유지 관리 정책과제 모색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주요 과제 및 문제점

첫째, 법 제도적인 입법과제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체계상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도로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법과 같은 다양한 개별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공용재산의 경우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국유재산의 균형적인 관리와 오늘날 중시되는 국가재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용재산 및 보존재산, 기업재산에 대한 개별법 제정 등의 입법 불비에 관한 과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유재산 관리체계상의 문제이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관련 총괄청(기획예산처)이 모든 국유재산을 총괄하고, 그 관리 및 처분까지 담당하는 일원적 구조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총괄청으로 일원화되었지만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여전히 위임되어 관리되는 이원적 구조에 있는 현실이다. 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과 중앙관서 장(長) 간의 협업이 어려워 칸막이식 관리,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통합적인 국유재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행정재산 관리 중앙관서의 법적 위치형성 문제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행정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화된 중앙관서상의 훈령으로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의 이견과 의견불일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구체성과 현장성 등 국유재산의 업무 특성상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은 실정이다.

넷째, 국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결여 및 확보과제이다. 국유재산 관리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각종 법규의 적용 문제이다. 토지 관련 공법¹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과 특히 부동산가격의 평가는 물론, 국유재산 관리에 연계되는 수많은 관련 규정이 복잡적으로 작용하고, 상호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관료조직의 권위주의와 보수적인 마인드가 국유지에 대한 민간경영기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과감한 정책개발과 적극 행정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함의 모색: 해외사례

본 논의는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를 위한 주요 정책의제설정(Policy Agenda Setting)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처분위주² 정책에서 유지보존 위주의 정책³ 그리고 현재 확대활용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⁴에서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개를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해외사례 분석에 기초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적 전개와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유지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편의 증대와 국익을 위한 다(多)가치적 국유재산 관리 방향성 추구이다. 국유재산 관련 법률체제와 정책 방향은 나라마다 역사적·정치적 배경이나 권력체제와 행정시스템 등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과거 국가재정의 주요한 세입수단으로서 매각과 현재 재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극적 정책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민간과의 공동개발, 랜드마크 국유지 활용 및 국유재산 가치상승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정책으로의 변화 등이 주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주요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유재산 구분	• 기능적 분류 내무부 이용 재산, 여분재산, 잉여재산	• 기능적 분류 일반재산, 군용재산, 의료시설	• 기능적 분류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재정재산	• 기능적 분류 공공재산, 사적재산	• 법적 분류 행정재산, 보통재산
관리기구	내무부 및 다른 연방정부기관 (총괄기관 없음)	일반재산관리자문 기구(PACE): 재무성 소속 조달청 산하조직 (총괄기관 없음)	연방재산청(BALIMA): 재무부 산하, 독립위원회, 강력한 일원체제, 총괄기관, 51개 지방청을 둠	Le Domaines: 경제재정산업부 소속 국세청 산하조직 (총괄기관 역할)	재무성: 행정재산은 각 성청이 관리 (총괄기관 역할)
관리기구 역할	신규토지의 취득 및 이용계획 수립	국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중재·조정 및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매각, 시설관리 연방 산림 관리, NATO 등 외국주둔군 지원 등	국유재산 처분 및 임대 조건 설정 및 감사·통제	국유재산 관리, 조정, 감사 및 보통재산 관리 처분 등
특이 사항	- 관리기준: 연방정부 관리규정 - 내무부 산하 토지 관리국은 행정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관리 하며 주로 처분 및 조사 실시, 내무부는 각 부처의 자산과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	- 관리기준: 국유재산 관리규약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e-PIM)을 구축하여 부처 간 조정 등 통합관리 - 부처 간 조정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자산을 단계 별로 분류하여 부처 간 조정을 하고 임대조건 결정	- 관리기준: 각 부처 별 개별적 관리 - 패전 후 통일 전후 국유지 관리정책의 특성에 대한 시사성 - 동독 재산의 사유화를 위한 신탁법, 신탁청에 의함	- 불용재산은 원칙 매각, 예외적으로 지방정부 등에 무상양여·저리로 할부매각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TGPE) 구축하여 정보 업데이트 자동화	- 임대기간: 임대 목적에 따라 30년 에서 1년, 갱신은 3년 원칙 - 임대료 기준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가격(공시지가의 약 70% 수준)고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도시개발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산림법, 부동 산중개입 등.
2. 정부수립 초기에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조자금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이 취약했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으로 수입의 부족을 충당했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확대하는 시기였다.
3. 1976년 국유재산의 관리를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제도의 변동과 아울러 관리기관도 국세청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전환되었다. 1976.12. 국유재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1977년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유지의 매각을 제한하고 보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4. 기존의 소극적인 국유지 관리에서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4년에 국유재산 관리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신탁개발제도를 도입했고, 2004년에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둘째, 국유재산 관리체계상 이원화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이다. 관리체계에서는 중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전제 국유재산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 기술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경우 공기업이나 외청, 지자체 등에 그 관리를 법적으로 위임·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기관 및 활용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행정재산과 다른 성격을 지닌 일반재산에 대해서 민간관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휴국유재산의 관리에 민간의 적극적 활용법을 접목하기 위해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민간관리 기법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재산 관리 및 활용법은 국유재산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넷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한 종합적·계획적·체계적 국유지 관리업무의 추진이다.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 무단점유의 해소,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貸付)제도의 개선, 국유재산 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진일보한 정책과 무관심했던 국유지 관리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정책의제(Policy Agenda) 설정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와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적 논의와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설계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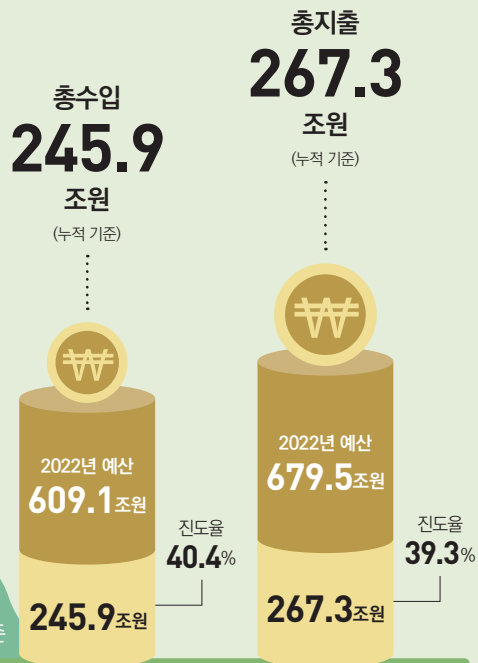
첫째, 통합적·종합적인 국유재산 관리조직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기관은 국유재산 유형에 따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유재산 관리조직은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과 위임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 캠프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관리조직상 총괄청에 의한 일원적 구조이나 실질적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이원적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간의 유기적 협업이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행정재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래세대 국유지 관리정책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은 국유재산의 효과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의제설정에 해당된다.

둘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특례운용을 위한 주요 방향성에 관한 의제설정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의 주요 기능에 기초하여 미래 사회현상과 신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중장기 국유재산정책 의제설정과 정책설계 노

력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신설 등 국유재산 특례를 통해 공익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원칙 확립, 수혜자 간 형평성 도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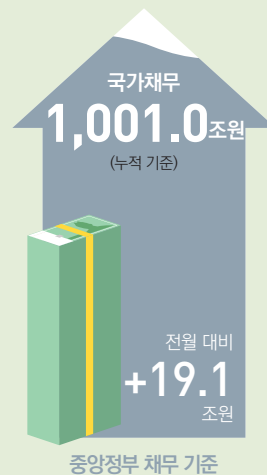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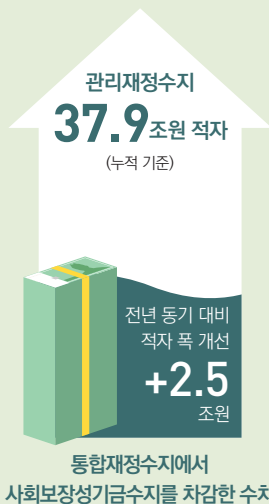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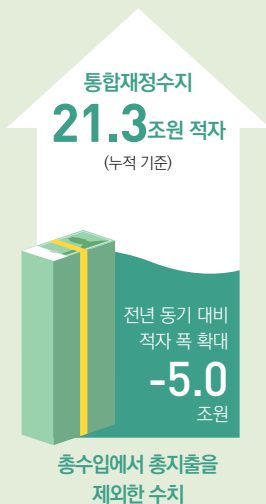
셋째, 효율적·효과적 국유지 관리와 미래 사회 수요에의 적극적 대응 위한 기본 인프라의 정비이다. 우선,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전문인력의 운용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유지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통합적 DB 구축 그리고 정보의 공유이다.





2022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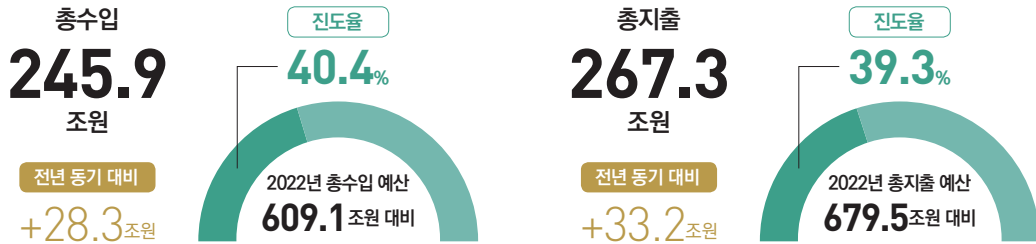
글.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6.

총 수입 · 총 지출

● 2022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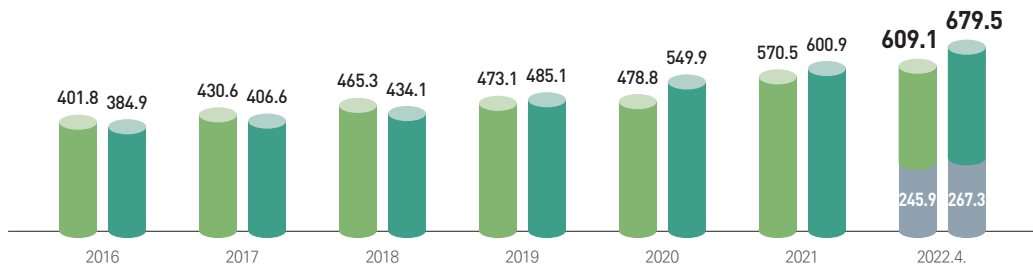


주: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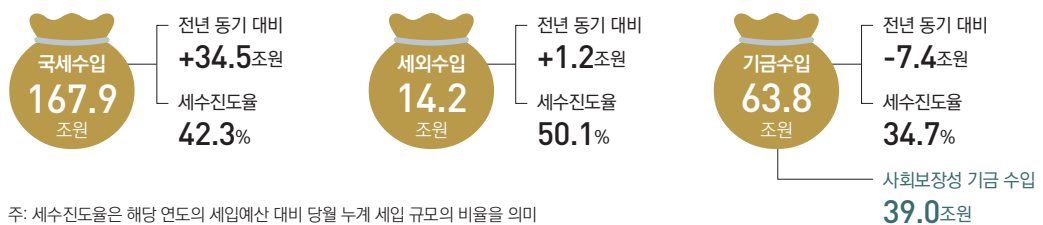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원)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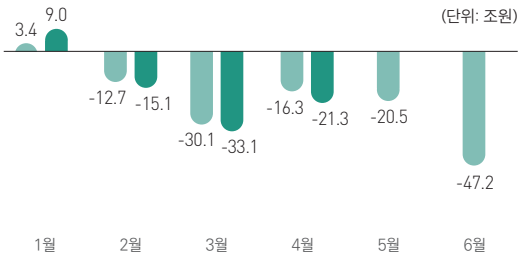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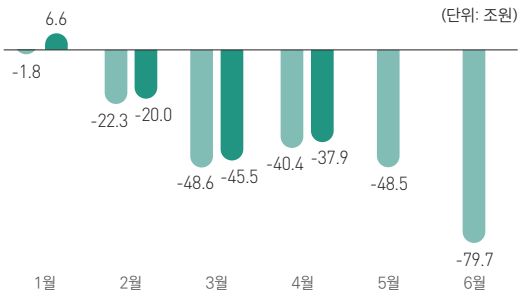


재정수지

● 2022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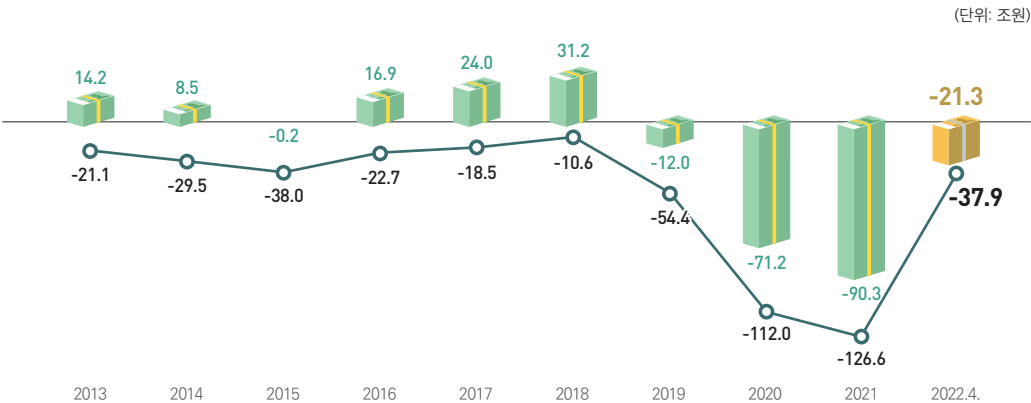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5.0조원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 가 채 무

● 2022년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19.1조원

전년 대비

+61.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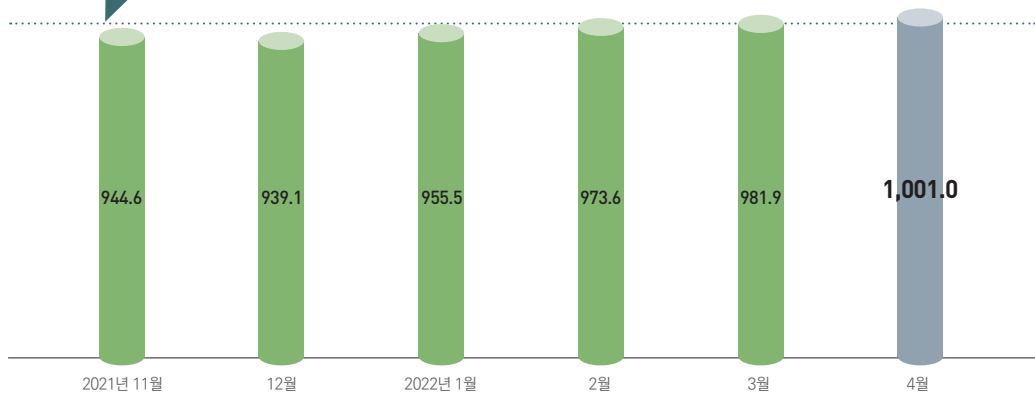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1,001.0
조원



2022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1,001.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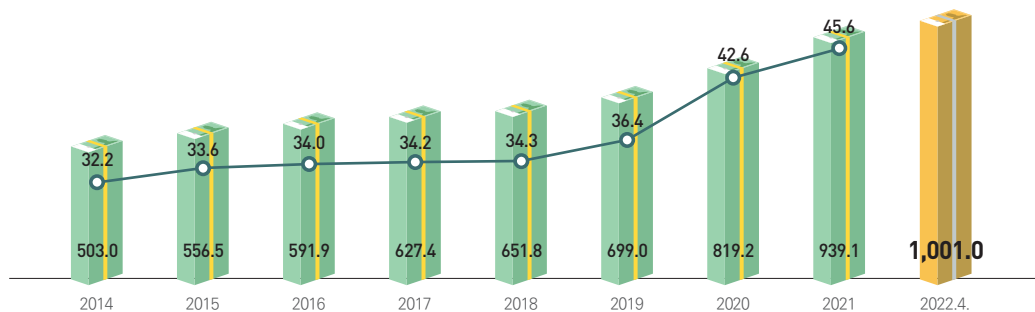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 누적채무 ● GDP 대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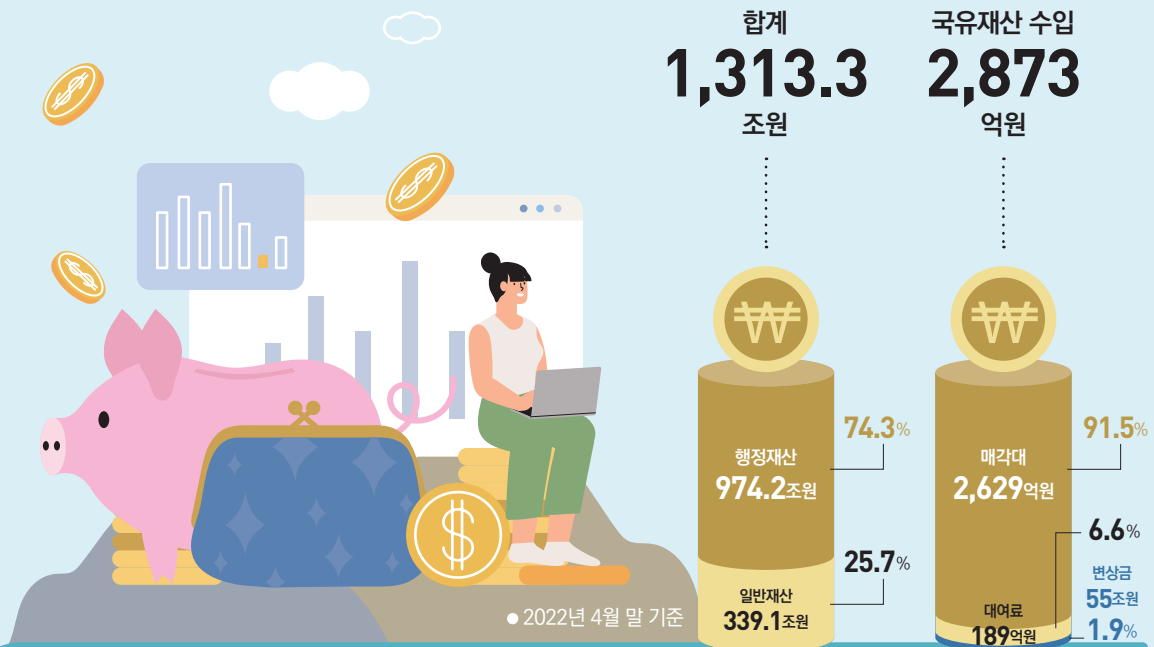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22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

글.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국유재산 취득
13,034억원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토지
478억원
(3.7%)

건물
294억원
(2.2%)

기타
12,262억원
(94.1%)

국유재산 처분
2,292억원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토지
1,417억원
(61.8%)

건물
560억원
(24.4%)

기타
316억원
(13.8%)

* 「숫자로 보는 나라재산」은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정보는 e나라재산 「국유재산 포털(www.k-p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 2022년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1.2조원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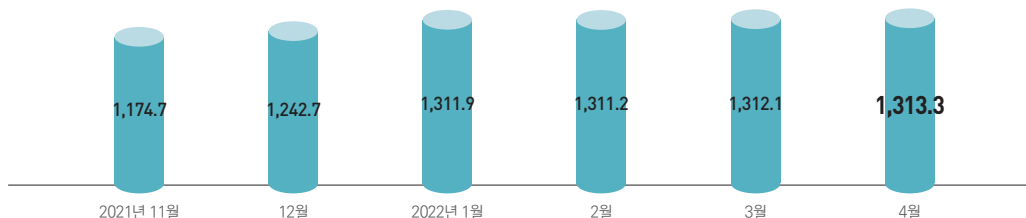
+149.9조원

국유재산
1,313.3
조원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

(단위: 조원)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

행정재산
974.2
조원



74.3%



25.7%

일반재산
339.1
조원

* 국가의 공공재산(청사, 관사),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기업용재산(정부기업 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등)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단위: 조원, 잠정)

행정재산	구분	일반재산
590.0	토지	39.5
70.1	건물	2.2
301.9	공작물	0.2
1.2	기계기구	-
5.5	임목죽	2.1
3.8	선박·항공기	-
-	유가증권	295.1
1.8	무체재산	-

주 1) 공작물: 국유지 또는 국유건물에 부착된 철탑, 울타리 등 시설물

2) 임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3)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국유재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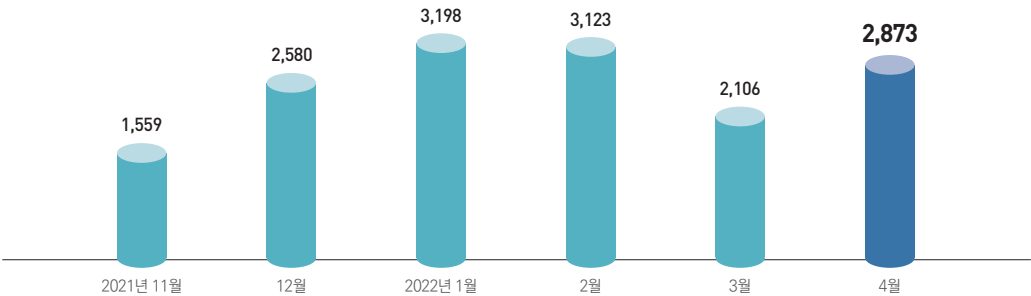
● 2022년 4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67억원

전년 동기 대비
+111억원



(단위: 억원)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

매각대
2,629
억원

전월 대비 **+722**억원
전년 동기 대비 **+175**억원
국유재산 수입 비중 **91.5%**

변상금
55
억원

전월 대비 **-7**억원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국유재산 수입 비중 **1.9%**

대여료
189
억원

전월 대비 **+51**억원
전년 동기 대비 **-82**억원
국유재산 수입 비중 **6.6%**

매각대
2,629
억원

토지, 건물 등
1,491
억원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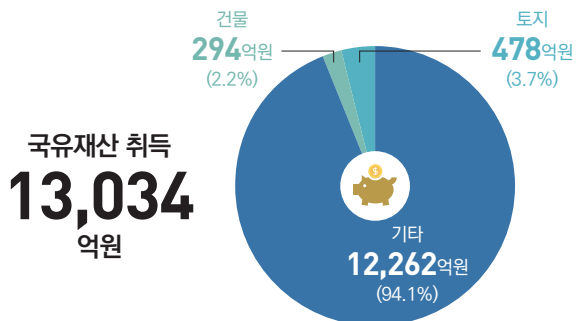
재고자산
1,137
억원
43.2%

기타고정자산
1억원
0.04%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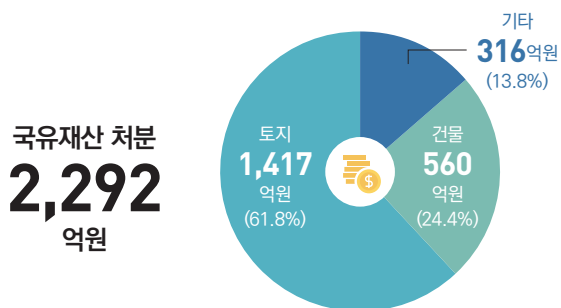
국유재산취득·처분

● 2022년 4월 말 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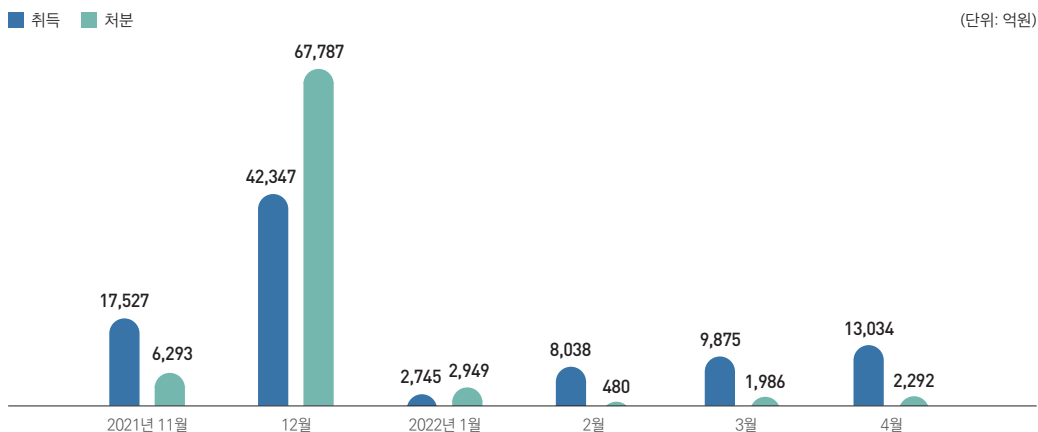
	매매(%)	교환(%)	기타(%)
합계	12,229(100.0)	44(100.0)	761(100.0)
토지	222(1.8)	44(100.0)	212(27.8)
건물	59(0.5)	-	235(30.9)
기타	11,948(97.7)	-	314(41.3)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2,019(100.0)	43(100.0)	229(100.0)
토지	1,152(57.0)	43(100.0)	222(96.9)
건물	554(27.4)	-	6(2.6)
기타	314(15.6)	-	2(0.8)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민생안정

(경제관계장관회의)

이달의 이슈키워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간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 먹거리·생계비·주거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는 '추경', '물가', '프로젝트' 등이 도출됐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한 물가변화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부 재정사업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연관어

추경

물가

프로젝트

정부

국회

경제

대책

소상공인

서민

지원

물가안정

국민

손실보상

규제

주: 민생안정이 포함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22.6.10.), 수집기간: 2022.5.11~6.10.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우크라이나 사태, 자원 무기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식량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민생 경제에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 문제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¹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 증가로 가계 생계비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주요 식료품 자재 등 원가 부담 완화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 정상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분야	주요 내용
먹거리	①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② 김치·장류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③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생계비	④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⑥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⑦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주거	⑧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⑨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⑩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2022).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재구성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이후 6월 9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후속조치를 위해 다음날인 10일 재정집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생안정 사업집행 준비사항, 물가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민생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재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¹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3.6%, 3.7%, 4.1%, 4.8%, 5.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생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	11,260	4,563	19,205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	-	10,242	2,960	9,902
비축 지원	5,643	6,189	5,268	5,303	5,620
친환경농자재 지원	2,032	1,888	1,916	1,639	2,382
에너지바우처	831	997	1,675	1,357	2,306

주: 2018년 본예산, 2019년 1회 추경, 2020년 4회 추경, 2021, 2022년은 2회 추경 기준
 자료: 열린재정. (2022).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및 「사업별 예산 시계열」 재구성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2021년 대비 1조 4,642억원 증액한 1조 9,2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 3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수급자는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신규는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비용은 기존, 신규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전부 가능한데,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지원요건은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된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이다. 소득감소요건은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기간²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6,942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취약한 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의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79만가구, 법정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가구 등 총 227만가구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추경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지원 자격 보유 가구인데, 지자체를 통해 해당 가구

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차상위 계층은 7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2022년 6월 24일~7월 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 비축지원

비축지원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317억원 증액한 5,62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산 농·수산물 도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비축수입하고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조절한다. 정부는 인도의 밀 수출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밀가루 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대비 743억원 증액한 2,382억원을 2022년에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존해 비료 가격의 안정을 지원한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정부는 무기질 비료 상승분 국가 부담률을 10%에서 40%로 높이면서, 농산물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냉난방,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크게, 순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냉방지원 등으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대비 949억원 증액한 2,30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17만 2천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포(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동절기와 하절기를 통합하여 1회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21년 3, 4, 10,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에 하나를 비교대상 소득 기간을 택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 보고서 「Taxing Wages」

OECD에서는 매년 5월 경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보고서인 「Taxing Wages」를 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격차(tax wedge)' 지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가구 형태 및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분석했다. 조세격차는 고용주가 노동에 지불하는 비용과 직원의 실질 급여 간 차이로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OECD 회원국의 2021년 조세격차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연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kym21@kpfis.or.kr)



1. 2021년 OECD 국가의 조세격차 현황

2021년 OECD 국가의 평균 조세격차는 34.6%이며, 이는 평균임금을 받는 1인 근로자¹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조세격차는 0.06%p 감소했으며, 24개국에서 증가, 12개국에서 감소, 2개국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즉,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조세격차가 상승했지만, 일부 회원국의 조세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OECD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준 것이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조세격차가 크게 감소한 국가는 호주(-1.25%p), 라트비아(-1.73%p), 그리스(-2.23%p), 체코(-4.12%p)이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낮아진 것이 그 이유였다(표 1). 한편, 조세격차가 증가한 24개 회원국에서는 평균임금, 개인소득세가 증가하거나, 세액공제가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은 증가하면서도 과표 구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여 개인소득세가 증가하거나, 벌어들이는 임금 대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개인소득세를 더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캐나다, 핀란드에서는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의 증가로 인해 조세격차가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료는 2020년 3.68%에서 2021년 3.83%로 0.15%p 증가했다.

2. 가구별 조세격차

동 보고서에서는 2021년에 들어 조세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주목하여 서술했다(표 2).

● 두 자녀 외벌이 가구

평균임금 100% 수준에서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 OECD 평균은 24.6%, 무자녀 독신 근로자(1인 근로자)의 평균은 34.6%이며, 두 유형은 2020년과 비교하여 각각 0.42%p, 0.06%p만큼 하락했다.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에 조세격차가 더 낮은 이유는 국가에서 재정적 혜택(세제 혜택, 지원금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살펴보았을 때,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1%p 이상 증가한 나라는 10개국이었다.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2021년에 들어서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축소된 것이 원인이었다(일회성 추가 급여 지급 중단, 아동 수당 수혜자 제한 등).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SSC가 증가하거나 세제 혜택이 감소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 조세격차가 1%p 이상 감소된 국가는 고용주 인두세율(payroll tax rate) 인하, 지원금(cash benefits) 지급,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

¹ 언급되는 모든 '1인 근로자'는 평균임금 100% 수준의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

되었다(호주, 칠레, 체코, 그리스, 미국). 칠레에서는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25.5%p)했는데, 이는 ‘임시 긴급 가족 소득(Ingreso Familiar de Emergencia)’의 도입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 총 조세격차 비교

(단위: 2021년 인건비 대비 %)

국가	2021년 조세격차	2020~2021년 차이(%p)			
		조세격차 차이	소득세	피고용인 SSC	고용주 SSC
벨기에	52.6	0.38	0.35	0.00	0.03
독일	48.1	-0.72	-0.86	0.07	0.07
오스트리아	47.8	0.37	0.37	0.00	0.00
프랑스	47.0	0.45	0.44	0.00	0.01
이탈리아	46.5	-0.41	-0.41	0.00	0.00
슬로베니아	43.6	0.46	0.46	0.00	0.00
헝가리	43.2	-0.48	0.11	0.13	-0.72
핀란드	42.7	1.33	-0.26	0.13	1.46
스웨덴	42.6	-0.08	-0.08	0.00	0.00
포르투갈	41.8	0.30	0.30	0.00	0.00
슬로바키아	41.3	0.01	0.14	0.02	-0.15
라트비아	40.5	-1.73	-1.03	-0.37	-0.33
룩셈부르크	40.2	0.75	0.70	-0.01	0.06
체코	39.9	-4.12	-4.12	0.00	0.00
터키	39.9	0.44	0.44	0.00	0.00
스페인	39.3	0.28	0.28	0.00	0.00
에스토니아	38.1	0.73	0.73	0.00	0.00
리투아니아	37.6	0.52	0.52	0.00	0.00
그리스	36.7	-2.23	0.01	-0.93	-1.30
노르웨이	36.0	0.20	0.12	-0.01	0.08
덴마크	35.4	0.16	0.16	0.00	0.00
네덜란드	35.3	-0.76	-0.33	-0.49	0.06
폴란드	34.9	0.08	0.08	0.00	0.00
아일랜드	34.0	0.29	0.29	0.00	0.00
일본	32.6	0.06	0.06	0.00	0.00
아이슬란드	32.2	-0.36	-0.14	0.00	-0.22
캐나다	31.5	0.60	-0.02	0.39	0.23
영국	31.3	0.40	0.21	0.09	0.10
코스타리카	29.2	0.00	0.00	0.00	0.00
미국	28.4	1.20	0.49	0.00	-0.04
호주	27.1	-1.25	-0.66	0.00	-0.59
이스라엘	24.2	1.02	0.70	0.22	0.10
한국	23.6	0.23	0.01	0.13	0.10
스위스	22.8	0.32	0.27	0.02	0.02
멕시코	19.6	-0.78	-0.92	-0.01	0.15
뉴질랜드	19.4	0.16	0.16	0.00	0.00
칠레	7.0	-0.03	-0.03	0.00	0.00
콜롬비아	0.0	0.00	0.00	0.00	0.00
OECD 평균	34.6	-0.06	-0.04	-0.02	-0.02

주 1) 평균임금을 받는 자녀가 없는 독신 근로자 기준이며, 조세격차가 큰 순으로 정렬

2) 반올림으로 인해 소득세+피고용인 SSC+고용주 SSC의 합인 2020~2021년 조세격차 차이가 0.01%p 차이가 날 수 있음

3) 해당되는 국가에 한하여 급여세(Payroll Tax)를 포함

자료: OECD, (2022). 「Taxing Wages」, p.24

〈표 2〉 근로소득별·가구 유형별 조세격차 평균

(단위: 인건비 대비 %)

평균 근로소득별·가구 유형별	2021년 OECD	2021년 한국	2020~2021년 차이(%p)	
			OECD	한국
평균임금 67%의 무자녀 독신 가구	30.5	20.4	-0.38	0.25
평균임금 100%의 무자녀 독신 가구	34.6	23.6	-0.06	0.23
평균임금 167%의 무자녀 독신 가구	38.9	26.6	-0.01	0.39
평균임금 67%의 두 자녀 한부모 가구	15.0	15.4	0.09	1.41
평균임금 100%의 두 자녀 외벌이 가구	24.6	19.6	-0.42	1.03
평균임금 100%와 67%의 두 자녀 맞벌이 가구	28.8	20.2	-0.36	0.72
평균임금 100%와 100%의 두 자녀 맞벌이 가구	31.2	21.8	-0.31	0.63
평균임금 100%와 67%의 무자녀 맞벌이 가구	32.8	22.3	-0.28	0.24

주: Tax wedge-Comparative tables, URL: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5129#>(접속일자: 2022.6.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료: OECD, (2022), 『Taxing Wages』, p.66

●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2021년 OECD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평균임금 100%와 67%)에 대한 조세격차는 28.8%로 2020년과 비교하여 0.36%p 감소했다. 14개의 국가에서 두 자녀 맞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감소했고, 23개 회원국은 증가했으며, 코스타리카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14개 국가에서 조세격차가 감소한 이유는 소득세 개정, 평균임금 감소, 아동 수당 증가, 소득세 감면, 피고용인과 고용주 SSC 감소 영향이 있었다. 회원국 중 벨기에(45.2%)의 조세격차가 가장 높았으며, 칠레(-6.0%)와 콜롬비아(-8.6%)는 조세격차가 음수였는데, 이는 두 자녀 맞벌이 가구 수준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격차의 구성요소인 개인소득세, SSC, 지원금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개인소득세가 인상된 국가는 총 17개국, SSC가 증가한 나라는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와 SSC가 평이하게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있었다.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

평균임금 100% 1인 근로자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조세격차(23.6%)는 OECD 평균(34.6%)보다 낮으며 2020년 이후 개인소득세, 피고용인과 고용주 SSC의 증가에 따라 조세격차(+0.23%p)가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개인 평균 세율은 2020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세전 실질소득과 세후 실질소득은 감소했다. 또한, 조세 부담에 있어 평균 세금과 기여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해당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외벌이 가구(19.6%)와 맞벌이 가구(20.2%)의 경우, OECD 평균(24.6%, 28.8%)보다 낮았으나, 2020년 1인 근로자보다 조세격차 증가 폭이 컸다(+1.03%p, +0.72%p).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서 정부의 조치가 완화된 것과 인플레이션, 근로소득 상승에 대한 영향이 맞벌이 가구에 제공되었던 지원금 감소와 개인소득세, SSC 증가로 이어져 조세격차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동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가 조세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관점으로는 팬데믹 기간의 조세격차 변화, 각 국가에서 시행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적 대응, 2000년부터의 조세격차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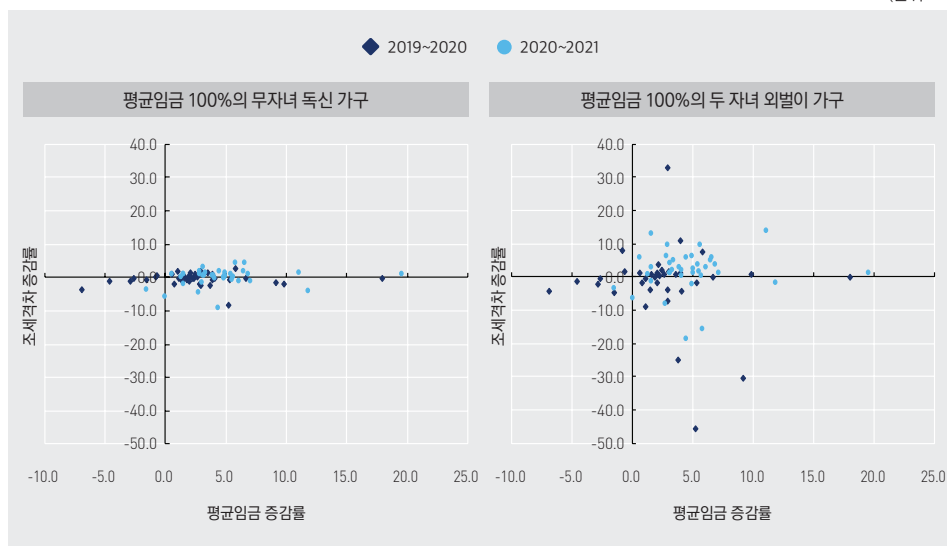
● 2019~2021년 조세격차의 변화

OECD의 이 보고서는 평균임금 100%를 받는 독신 근로자(1인 근로자)와 평균임금 100%를 받는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평균임금과 조세격차의 상관관계를 통해 2019년과 2021년 사이 변화에 주목했다. 두 가구 유형 모두 2019~2020년 사이의 평균임금과 조세격차의 상관관계가 2020~2021년보다 약했다(그림 1). 즉, 2019~2020년 평균임금은 상승하고 조세격차는 줄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2020년 정책적 조치의 영향으로 보았다. 2020~2021년에는 두 가구 유형 모두 조세격차가 증가하고 평균임금도 상승했다. 2020~2021년에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가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19 정책 조치가 철회되거나 축소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한부모 가구는 2019년과 2021년 팬데믹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세격차가 감소했다. 2021년 칠레에서 시행된 긴급 가족 소득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의 조세격차가 크게 감소하여 OECD 평균의 감소폭(1.0%p)에 크게 일조했다. 칠레를 제외할 경우 2019~2021년 OECD 평균 조세격차 감소폭은 1.0%p에서 0.2%p로 줄어든다.

〈그림 1〉 평균임금 변화와 조세격차 변화의 상관관계

(단위: %)



주: 칠레는 두 자녀 외벌이 가구에서 350% 이상의 조세격차가 감소하여 제외됨

자료: OECD, (2022). 「Taxing Wages」, p.51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 국가의 조치는 <표 3>과 같다. 한국은 2020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했으며,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생활구호자금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실업수당 과세에 대한 환급 조치를 실행했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독일),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감소(헝가리), 임시 근로소득세 면세(스웨덴)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표 3> 정부의 코로나19 세제 혜택 조치

국가	개인소득세(PIT)						사회보장기여금(SSC)						세금관련 혜택 지원			
	감면 변경사항		세율 변경사항		납세 이연		부과액 변경사항		공제/할인		부과 취소		SSC 납부 이연		지원금 변경사항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20년	'21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																
미국																

주: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는 정책 조치만 포함되었으며, 짙은 파란색은 조세격차를 구하는데 포함되는 사항, 녹색은 포함되지 않는 사항임
 자료: OECD. (2022). 'Taxing Wages', p.48

● 2000년 이후의 조세격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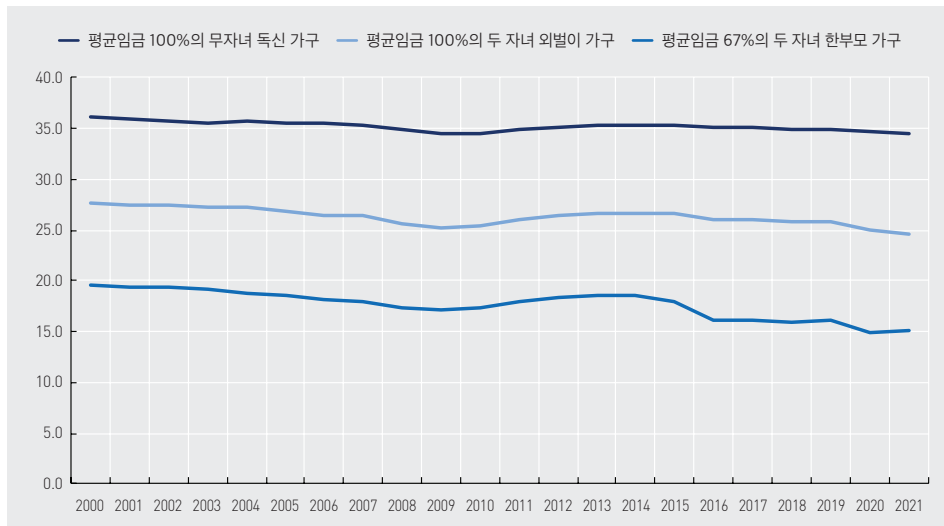
팬데믹 기간 동안의 조세격차 패턴이 보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의 조세격차 장기 추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1인 근로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의 조세격차가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크지 않았다. 2000년에서 2021년 사이의 평균 조세격차는 1.6%p 감소했으며, 가장 급격히 감소한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사이에는 0.5%p 감소하여 2009년 34.4%를 기록했다(그림 2).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팬데믹 기간 동안 독신 근로자(1인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 간의 조세격차 차이는 벌어졌으며, 외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조세격차는 조금 좁혀졌다. 2009년,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1년 이후 외벌이 가구 유형에서 조세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칠레였다.

조세격차를 계산하는 구성요소인 개인소득세, SSC, 지원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외벌이 가구(-0.6%p)와 한부모 가구(-0.7%p)의 개인소득세가 감소했다. 2010년 이후에는 외벌이 가구의 개인소득세는 증가하기 시작하고, 한부모 가구는 2014년까지 개인소득세 증가, 2017년까지 감소했으며 그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두 가구 유형(외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에서 SSC는 2000~2021년 사이에 점차 감소하여 1.2%p 하락했다. 한편, 피고용인 SSC와 고용주 SSC의 추세는 정반대였다. 피고용인의 SSC는 0.4%p 증가한 반면, 고용주의 SSC는 1.6%p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은 2000~2021년 사이에 증가했으며, 2012~2014년 동안은 감소했다. 2000~2021년까지 외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5.8%로 1.1%p 증가했으며, 한부모 가구는 11.5%로 2.0%p 증가했다.

〈그림 2〉 2000~2021년 OECD 평균 조세격차 추이

(단위: %)



자료: OECD. (2022). 「Taxing Wages」, p.55



4.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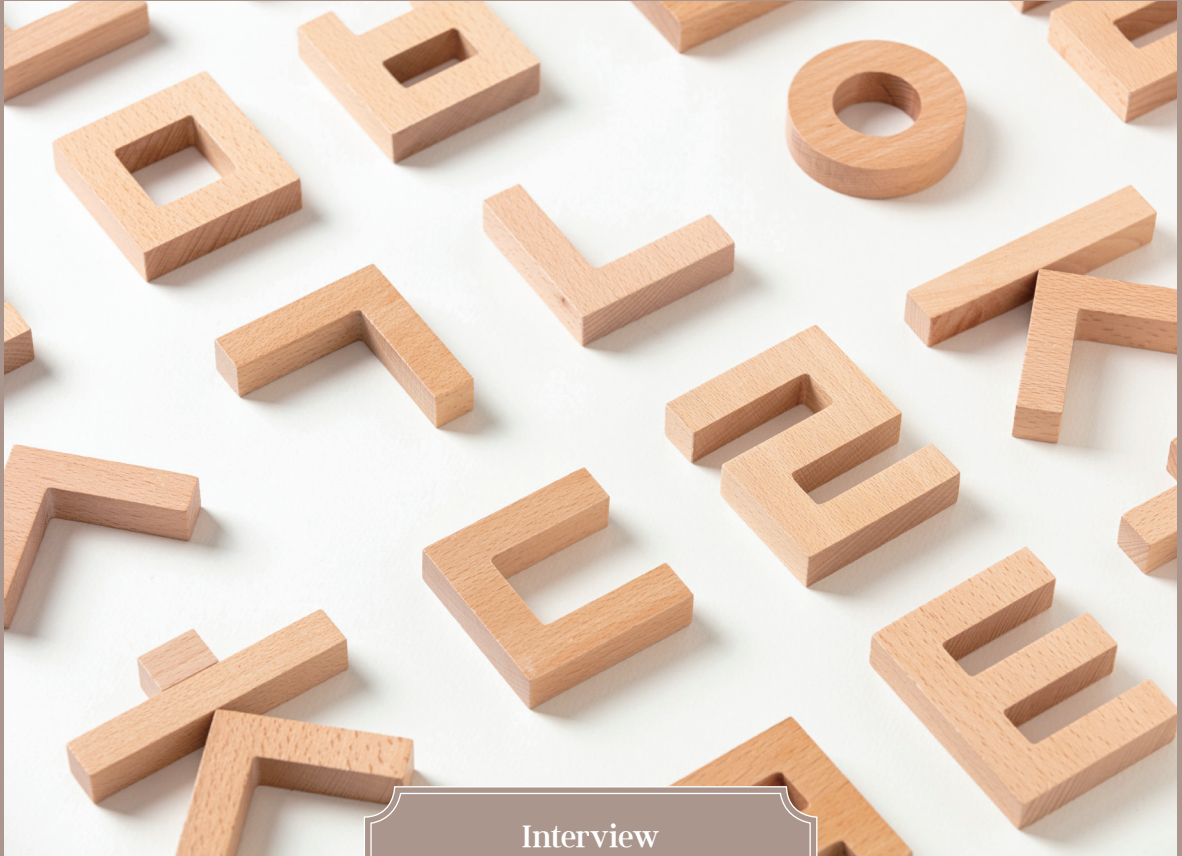
2021년까지 코로나19는 계속되었으나, 2020년만큼 피해가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백신 접종 국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바이러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 GDP는 2020년에 4.7%로 감소한 후 2021년 약 5.3%로 성장했다. 고용 수준, 근로 시간, 노동 참여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임금 상승 속도가 소비자 물가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계와 소득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고용 유지 계획, 지원금 등 많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축소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의 평균 조세격차가 감소했고 이는 정부가 시행한 팬데믹 대응 정책 때문이었다. 평균임금이 오른 몇몇 국가에서도 조세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조세격차 감소의 영향은 일부 국가의 감소폭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즉,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경제 회복이 시작되고 바이러스 영향이 완화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코로나19 지원 조치는 중단되어 조세격차는 조금씩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의 지원 조치는 주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득세에 대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기록했던 것만큼의 큰 변화는 없었다. 예컨대 2020년의 평균임금은 200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했지만, 2008년 2009년 사이에 조세격차가 감소한 국가가 더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22년의 노동시장은 더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과 2022년에 OECD 회원국의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평균임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경제 회복을 저해함에 따라 고용 전망 또한 악화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말 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간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Interview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강미영 과장

언어는 그 나라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다. 언어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한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과장을 만났다.

글. 정재림

국어 정책 전문 기관,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언어생활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어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문 기관이다. 1990년에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 담당 기관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이 창립됐다. 이후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어 정책 업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비상설 심의 기구를 통해 결정해오던 국어 정책을 전문 기관의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립국어원 언어정보와 강미영 과장을 만나 국립국어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물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어문 규정을 현실화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국어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문 규정과 외래어 표기 용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개방형 사전) 등 국어와 관련한 정보를 쉽고 풍부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국가적 규모의 언어 자원을 수집·정리·관리하고 국가 언어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방송 언어 품격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인 수화 언어(수어)와 한국 점자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국수화언어법’ 제정(2016.2.3.)에 따라 2016년부터 특수언어진흥과를 설립하여 한국수어사전 편찬 및 말뭉치 구축 등 농인을 위한 한국 수어 연구 사업, 한국 점자 규정 보급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말 자원 ‘모두의 말뭉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 개발이 활발해졌다.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언어다. 국립국어원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국가적 규모의 언어 자원을 수집·정리·관리하고 국가 언어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어 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정보과의 ‘모두의 말뭉치’ 사업이다. 말뭉치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를 말한다. 언어정보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국립국어원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1세기 세종계획’이라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998년부터 10년간 국어 말뭉치 구축, 전자 사전 개발, 한민족 언어 정보화 등

의 사업을 수행하여 2억 어절가량의 국어 말뭉치와 60만 항목의 전자사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종계획’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국어 사용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한국어 처리 기술도 많이 진화하여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대용량의 언어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양질의 언어 자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많이 구축되느냐에 따라 그 성능이 좌우되게 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에서는 변화된 국어 사용 환경을 반영한 국어 말뭉치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학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과 언어 처리 산업 발전에 국어 말뭉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말뭉치는 목적에 따라 구축된다. 자료를 한데 모아 놓는 것이 목적인지, 언어 연구나 산업계 기술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 구축 등의 목적인지에 따라 자료 수집과 구축 방법이 달라진다. 별다른 분석 정보 없이 자료를 한데 모아 놓은 말뭉치는 원시 말뭉치라고 하고 특정한 분석 정보를 부착한 말뭉치를 분석 말뭉치라고 한다.

“우선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원시 말뭉치로는 문어, 구어 말뭉치가 있습니다. 문어 말뭉치는 각종 신문, 소설, 잡지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후, 전자 자료화합니다. 자료가 전자화되면 각 자료의 제목, 저자, 출판사 등의 정보를 메타정보로 포함하는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CSV(Character-Separated Values) 등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원시 말뭉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분석 말뭉치는 기존에 구축한 원시 말뭉치를 활용하여 구축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원시 말뭉치 구축과 동일하게 자료를 모으고 필요한 분석 정보를 추가하여 구축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문장이나 문단에 분석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원시 말뭉치와 분석 말뭉치는 언어학자들에게는 언어학적 연구 대상이며, 언어 처리 전문가들에게는 자연어 처리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수어 말뭉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등 특별한 말뭉치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이 다양한 소통 환경에서 편리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에서는 올해부터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한국수어 병렬 말뭉치’는 한국수어 영상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덧대어 놓은 형태로,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는 한국어 문서와 그것을 점역한 문서를 연결해 놓은 형태로 구축됩니다. 이들 말뭉치는 향후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자동 번역하는 기술이나, 자동 점역·역점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수어와 점자로 더욱 편리하게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란, 제2 언어 또는 외국어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생산한 쓰기 및 대화 자료를 수집하여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산

화한 언어 자료를 말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양상이나 오류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한국어 교육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원시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 오류 주석 말뭉치로 구체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학습자가 생산한 언어 자료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입력 또는 전사된 말뭉치를 원시 말뭉치라고 한다. 형태 주석 말뭉치는 학습자가 생산한 자료를 분석하여 품사를 포함한 형태 정보를 붙인 말뭉치이고, 오류 주석 말뭉치는 오류의 위치, 양상, 층위를 주석으로 단 말뭉치이다. 2022년 7월 현재 총 520만 어절의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 총 370만 어절의 형태 주석 말뭉치, 총 115만 어절의 오류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말뭉치 사업

국립국어원의 말뭉치 구축 사업은 국립국어원 대표 누리집(korean.go.kr)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구축된 말뭉치 결과물과 각 말뭉치의 세부 정보, 공지 사항 등은 모두의 말뭉치(corpus.korean.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2년 6월(현재) 기준, 총 32종의 말뭉치를 공개·배포하고 있다. 신문 말뭉치,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등의 원시 말뭉치와 추론 확신성 분석 말뭉치, 개체명 말뭉치, 상호 참조 해결 말뭉치 등의 분석 말뭉치를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수집 및 구축한 한국어 말뭉치는 2020년 8월 처음 공개한 이래로 1만여 건 이상 배



포되었으며 개인 연구자는 물론 기업 및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률 자료를 다루는 엘박스 등 중소기업 및 새싹기업이 따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어 처리 기술 개발에 말뭉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삼성, 에스케이텔레콤 등 대기업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연구 기관도 인공지능 학습에 말뭉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에도 언어정보과에서는 다양한 말뭉치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시 말뭉치로는 신문 말뭉치, 일상 대화 말뭉치, 웹 게시 자료 말뭉치를 구축하고, 분석 말뭉치로는 개체명 분석 및 개체 연결 말뭉치, 감정 분석 말뭉치, 회의록 요약 말뭉치, 유사 문장 생성 말뭉치 등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어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축한 용어 자료를 한데 모아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정보를 구축하고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말뭉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우리말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구축·공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재정통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단상들

글.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과거에는 자료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재정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재정통계는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재정통계 부족 자체를 한탄했지만, 이제는 재정통계 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재정통계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보면 크게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생산 연계 단계, 데이터 개방과 공유단계, 그리고 의미도출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각 단계가 재정통계 생태계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생산단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재정통계 시스템이 있다. 지방정부 재정만을 살펴본다면 지방재정 및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 호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고,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다. 중앙정부는 dBrain 시스템,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재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자료 수집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실제로 이 데이터 생산단계가 질을 상당 부분 결정한다. 이 시스템은 주로 업무를 위해 설계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업무와 재정 데이터 생산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다. 재정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 관리자는 자료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자료 가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중간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해주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없는 직원을 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1990년대 과천청사의 정부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면 아래한글 문서를 작성해주는 인력이 각 과마다 한 명씩은 있었다.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을 위해 아래한글 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21세기에 그런 인력

은 이제 사라졌다. 재정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하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늘어날 때 시스템의 질도 개선된다. 이런 이유로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과 함께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을 함께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업무와 연계된 데이터 생산단계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간 연계이다. 재정 데이터는 정부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자료는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지방 단위의 재정정보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달행정 자료와 재정자료는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뛰어난 차세대 정보시스템 설계자라고 할 지라도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결하도록 설계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관 부처에서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도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통계 생태계에는 정부의 재정활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보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연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상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시스템 운영자의 동의 시 동형암호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동시 연계와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끊임없이 해킹 위협에 시달리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런 점에서 재정통계 생태계에는 재정통계에 적합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암호 관련 기술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재정통계 개방단계에 활용되는 시스템도 있다. 앞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과 달리 일반 국민이나 외부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은 이 생산된 1차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외부에 공개한다.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정의 국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의 핵심에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는 대부분의 재정정보시스템이 JSON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Open API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 인포그래픽스를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활용 사례개발에는 인색하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하는 코드와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SAS, R, Python 같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사용자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분석 사례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누가 더 많이 데이터를 공개하는지가 재정정보시스템의 중요 성과지표였다면 앞으로는 누가 분석 사례를 많이 제공하는지와 코드 제공 횟수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런 활용사례는 저절

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그룹을 조직하고 지원하면서 확대될 수 있다. 사실 R이나 Python 같은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급증한 이유도 바로 수많은 활용 예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통계 생태계는 소수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 그룹이 양성되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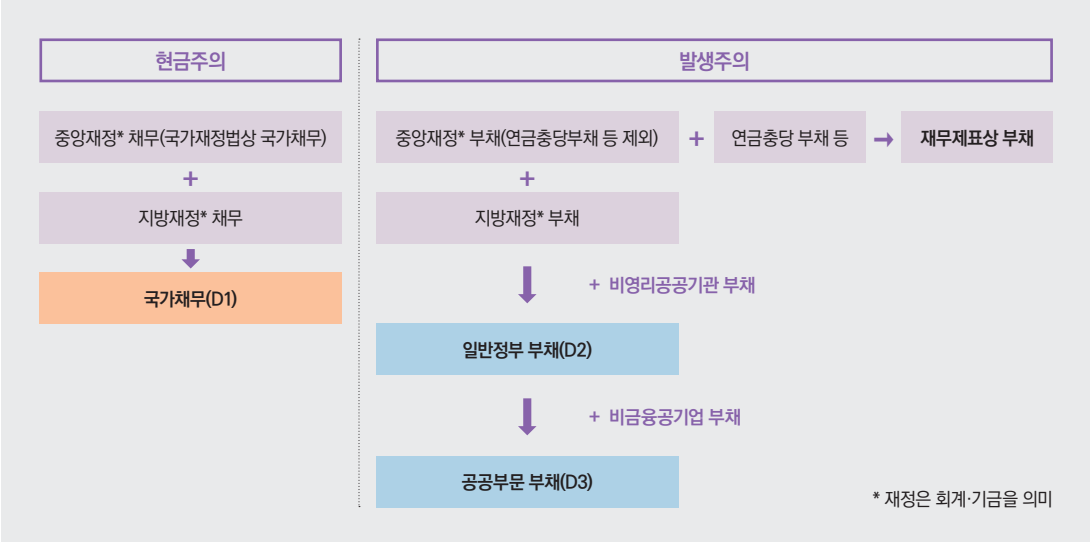
세 번째, 의미해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료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재정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국가부채 규모 사례를 들어보자. 국가부채는 흔히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로 측정이 되는데 전자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후자는 IMF나 OECD 등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다. D1과 D2는 후자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비영리공공기관은 무엇일까?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50여 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 487개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167개를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여 이는 D2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공공부문 부채(D3) 계산에 포함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시장성 여부 판단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는 시장성 없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167개의 비금융공기업 중 111개는 중앙정부의 비금융공기업이고 나머지는 지방공기업이나 공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기업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이 공기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서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국가채무(D1)



〈표 1〉 국가부채의 유형과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2020).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나 일반정부 부채(D2)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문 부채(D3)를 따로 집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의 D2는 810.7조원이지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395.8조원을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132.6조원에 달한다¹. D3에 다시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포함하는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된다. 이 금액이 2019년에 무려 944.2조원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참고로 2019년 정부예산은 5백조원이 조금 못 되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국가재무제표상의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만 있을 뿐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연금 고갈에 따라 정부가 적자보전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논리상으로는 적립식 방법을 채택하는 국

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의 채무부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².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게 되면 결국 기금 고갈로 인해 부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미래세대가 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논의를 한다면 연금충당부채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위 국가부채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일반인이 국가부채 데이터를 손쉽게 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의 의미해석이 재정정보가 창출하는 핵심적인 부가가치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메타 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 주목



해야 한다. 즉 자료를 누가 어떻게 수집했고, 수집된 자료에서 각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당 변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한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정 통계 생태계에는 행정과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애널리틱스는 단순히 통계기법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데이터 애널리틱스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의 공개와 연계, 그리고 의미해석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계분석만 잘하는 전문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어떻게 재정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시스템에 어떤 데이

터 정보들이 모이고 제공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다른 부처 사람을 설득하여 데이터 연계도 할 소통능력과 기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정정보시스템의 각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하므로 재정 실무와 이론 전문가도 필요하다. 재정정보원은 재정통계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의 근거 기반 정책의 선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³.

1 기획재정부. (2020.12).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 김완희. (2014). 공적연금 총당부채 회계의 이해. 재정포럼, 218(0), 12-24.

3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재정정보 분석과 관련된 6개월간의 칼럼을 마치게 되었다. 나라재정 원고를 담당해준 재정정보원의 황의종 차장님과 장윤정 부연구위원께 감사드리며, 원고를 읽고 항상 좋은 의견을 준 재정정보원의 박정수 박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경동 박사과정생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조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글.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며

어느 사회나 현실에서 조세제도를 만들고 관리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바람직한 조세 종목이나 세율에 대한 기준이 상정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조세징수활동을 포함한 재정활동 전반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물질적 생활에 주는 의미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결국 한 사회의 조세 징수와 납부가 납세자들의 물질적 생활에 주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세 종목이나 세율에 대한 기준’, 즉 ‘좋은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조세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날 재정문제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조세원칙의 문제를 다루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원칙에 대해서도 지난 호에서 다룬 조세 목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자들마다 각자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자들의 사회관에 따라 조세원칙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제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세원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많은 논자들이 납세자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할 수 있는 조세를 ‘좋은 조세’라고 한다. 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조세 징수 및 납부와 관련하여 명확성, 편리성 원칙, 그리고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원칙 등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 이 중 후자의 명확성, 편리성의 원칙이라든가 징세 내지 납세비용과 관련된 원칙은 누구나 공감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조세가 취해야 할 제도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효율성’, ‘공평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의미를 담은 원칙으로써 논자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 그 의미 차이는 지난 호에서 다룬 조세의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연재 글과 같은 선상에서 사회 내지 경제문제 설명 과정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와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을 중시하는 견해

우리는 앞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논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작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조세가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조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제거하고, 소득분배상 불공평성을 개선하며, 나아가 경제의 주기적 경기변동폭을 완화하여 안정·성장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조세에 부여된 목적을 수행해내기 위해 좋은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곧바로 효율성, 공평성이라는 원칙이다².

흔히 경제학 문헌에서 ‘효율성’이란 작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이는 시장에서 그들의 의지에 따라 각종 선택활동이 이루어질 때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원이나

¹ 논자에 따라서는 이 이외에도 조세수입의 충분성 내지 적절성, 신축성 내지 탄력성, 과세의 보편성의 원칙 등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² 이하의 설명 내용 및 관련된 참고문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명동, (2007), 〈조세론〉, 개정판, pp.155~166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술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각자 (한계적으로) 지불한 비용과 수취한 편익이 일치하도록 선택이 이루어질 때 주어진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세의 '효율성 원칙'은 세부적으로 보면 몇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공공재 공급 비용을 조세로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 조세'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상응하게 부과시킬 수 있는 조세를 일컫는다. 반면 조세부과가 민간인들의 선택행위에 주는 영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효율적 조세'란 조세부과 이전의 민간인들의 선택조합을 방해하지 않게 부과되는 조세를 일컫는다. 이러한 조세를 다른 말로 '중립적 조세'라 부른다. 이러한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가 민간인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대가격 비율을 변경시키지 않게 부과되어야 한다³. 이 두 측면의 '효율성'을 흔히 '정태적 효율성'이라 부른다. 한편 이와는 달리 '동태적 효율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정태적 효율성'은 '부존자원과 기술수준이 주어진 상태'에서 선택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인 데 비해, '동태적 효율성'은 '부존자원이나 기술수준 자체가 변화'되어 한 사회구성원들의 생산 및 소비 능력 자체가 높아진 상태를 일컫는다⁴.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내는 조세가 좋은 조세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들 중에 먼저 '효율성' 원칙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시민 각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는 편익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좋은 조세로 파악한 이래 많은 논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원칙이며, '중립적 조세' 원칙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논자들이 공통으로 따르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태적 효율성' 원칙은 리처드 머스그레이브(Richard Abel Musgrave)에 와서 본격적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도 다른 논자들처럼 앞에서 제시한 많은 조건을 수용하면서도 특히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을 도울 수 있는 조세를 좋은 조세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그가 1930년대 대불황기를 직접 목도하면서 조세부과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정부 개입을 통해 주기적인 경기변동이 주는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다 같이 '효율성' 원칙이라 하더라도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게 상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등장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부를 나누어 갖는 상태, 즉 분배가 바람직한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조세에 '공평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을 때 조세가 개입하여 더 바람직한 분배상태를 만들어낼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능력에 따라' 부담이 주어지는

³ 이는 조세부과 이전의 민간인들의 선택행위가 가장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제시된 원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⁴ 새로운 원자재가 발명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이 제고된다든가, 수출시장의 개척 등을 통해 한 사회의 공급과 수요능력이 새롭게 늘어나는 등의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부가 경기변동 과정에 소비 내지 투자 촉진,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기의 주기적 변동 폭을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조세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은 앞의 ‘효율성’ 원칙과는 달리 양적인 측정이 어려운 질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 말하자면 어떠한 상태를 ‘공평’한 상태로 간주할 것인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논자들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며, 그에 따라 ‘공평한 조세’에 대한 견해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효율적인 조세원칙을 제시한 <국부론>(p.777)의 내용을 보면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즉(that is)’, ‘각자가 국가의 보호 아래 향수하는 편익에 비례해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따옴표는 필자가 넣은 것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있다. 자세히 보면 이는 그가 납세자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해서 조세를 납부하게 하면, ‘곧바로’ 능력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이에 비해 자본주의적 사회발전이 이어지면서 독과점이 일상화됨에 따라 소득과 부의 편차가 심화되던 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아돌프 바그너(Adolph Wagner)는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 중 ‘공평성’ 원칙에 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도록 부과되는 조세를 ‘좋은 조세’로 인식하고 있어,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대표적으로 위 두 논자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조세에 요구되는 ‘공평성’ 원칙이라는 것도 사회에 대한 논자들의 인식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개인과 개인 간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

사회 내지 경제문제 설명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논자들 중에 먼저 ‘소유관계’ 내지 ‘생산관계’를 중시하는 논자들은 앞의 연재 글에서 서술한 바 있듯이 조세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본주의사회가 유지·발전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들은 개인중시론자들과는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원칙 논의에서도 개인중시론자들이 중시하는 ‘효율성’이나 ‘공평성’ 원칙 같은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맥락에서 조세원칙에서도 ‘잉여가치’에 대한 부과인 지 ‘필요생산물, 즉 임금’에 대한 부과인지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들 입장에서의 조세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원’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불되는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과 재산(자본) 등을

⁵ 여기서 일컫는 ‘공평성(Equity)’을 논자에 따라서는 ‘형평성(Balance; Evenness)’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바, 여기서는 더 이상 용어의 사용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분배가 바람직한 상태를 ‘공평’한 상태라 정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이 두 개념은 나누어 갖는 정도가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는 ‘균등(Equality)’ 또는 ‘평등’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⁶ 이는 규제와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던 절대주의시대를 벗어나서 자유자본주의시대로 가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Smith의 인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⁷ 이는 독점자본주의시대를 살고 있었던 Wagner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그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컫는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로 경제활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중에서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소위 필요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윤, 이자, 배당, 지대 등의 다른 소득들은 그와 같은 필요생산물을 넘어서는 소위 잉여생산물이 나누어진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 위에 이들은 필요생산물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과하고, 그 대신에 잉여생산물이 나누어진 이윤, 이자, 배당, 지대 등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거나 아니면 중과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⁸. 굳이 ‘공평’이라는 맥락에서 따지자면 이렇게 부과되는 조세여야 ‘공평한 조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이처럼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단순히 부담을 나누는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자본주의사회의 유지·발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회문화적 배경 내지 제도를 중시하는 논자들은 조세에도 사회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들의 생산적 본성을 촉진하여 사회 전반의 자본축적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생산관계중시론자들과 달리 ‘효율성’, ‘공평성’ 원칙을 다 같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개인중시론자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앞의 개인중시론자들과 달리 사회를 ‘이질적’인 개인 내지 계층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평성과 같은 가치문제를 다룰 때도 서로 다른 계층들이 주어진 여러 제도 속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발휘해낼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효율성 원칙’도 단순히 조세가 정부와 민간, 또는 민간인들 사이의 거래적 관계에서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구성원들의 물질적 생활 여건 자체를 변화시켜 그들의 잠재적 능력 발휘에 기여할 때 효율적인 조세로 파악하는 입장을 보인다⁹. 앞에서 언급한 ‘중립성’ 원칙도 유사한 맥락에서 기존의 사회 제 계층들 사이에 맺어져 있는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 상태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실의 왜곡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계층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도 조세가 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좋은 조세로 판단한다는 점에서도 개인중시 논자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총수요 조절과 같은 양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가 경제안정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생활과정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평성’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8. 이에 비해 앞의 개인중시론자들은 생산과정에서 노동, 자본과 자연(토지)이 다 같이 참여하여 그 성과로서 임금, 이윤, 이자, 배당, 지대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들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같은 차원’의 세원으로 간주하여(때로는 응익원칙, 때로는 응능원칙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두 견해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명동, (2007), <조세론>, pp.189-190을 참고하기 바란다.

9. 이들의 효율성과 개인중시론자들의 효율성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우명동, (2019), <경제와 사회>, 해남, pp.205-214를 참고하기 바란다.

맥락에서 이들은 단순히 양적 분배상태의 크기를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생산적 본성을 촉진하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는 긍정적 유인을 주고 비생산적 본성을 부추기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는 ‘음의 유인’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세가 구성원들의 생활과정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때 공평한 조세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⁰. 결국 이들은 어느 경우나 ‘조세원칙’이라는 것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특성 반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료나 전문가들에 의해 선형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되고 발굴되어야 할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¹.

3. 나오며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들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원칙이 중시되니까 그에 따라야 한다든지, 어느 저명한 학자가 특정 원칙을 중시하였으니 우리도 그 원칙에 따라 조세제도를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원칙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 주장되는 어떠한 주장도 특정 사회, 특정 시기의 특정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새롭게 조세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려 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해당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유능한 관료나 전문가가 그림을 그려내듯이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조세제도를 구상하는 것은 실제 삶의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그동안 다양한 조세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돌아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이 조세원칙과 조세체계의 설정 과정에서도 결국 해당 사회에서 삶을 꾸려가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담아내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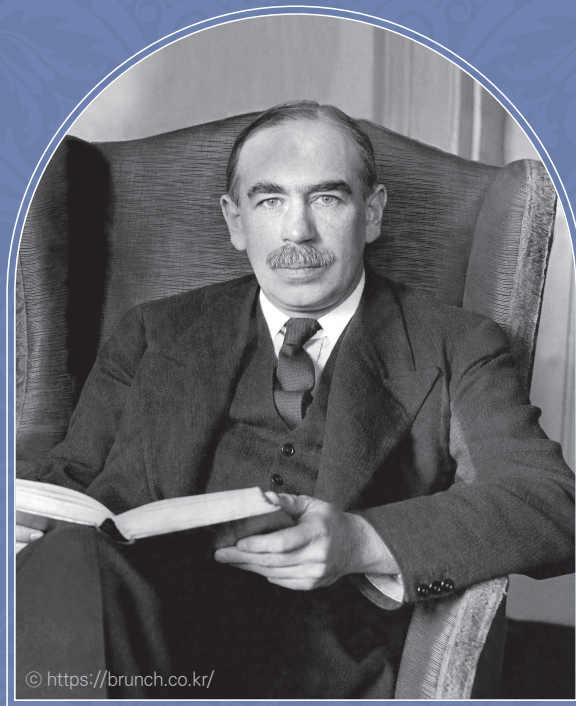
¹⁰ 참고로 노벨수상자인 Sen이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활성화를 중시하면서 ‘기본적 잠재능력의 균등(Basic capability equality)’을 주창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A. Sen. (1979). “Equality of What?”, The Tanner Lecture on Human Values Delivered at Stanford University, pp.217-219).

¹¹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은 어떠한 조세원칙도 그러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세제도들이 현실에서 ‘실행가능성’이 높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논자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Harold M. Groves. (1964). “Institutional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Land Economics, 40(3), pp.242L-R을 참고하기 바란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정립자 케인스의 재정이론



글. 김의섭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명예회장



© <https://brunch.co.kr/>

Keynes' Fiscal Theory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년

케인스의 생애 및 학문 여정

경제사상의 독창성이나 경제학에 대한 영향력으로 볼 때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년)는 경제학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883년 6월 케임브리지 중·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케인스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스(John Neville Keynes)도 경제학자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도덕과학 강의를 했다. 그의 어머니 플로렌스 에이다 케인스(Florence Ada Keynes)는 지역의 사회운동가였고 케임브리지 시장에 선출됐던 지성과 덕망을 갖춘 여성이었다. 케인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며 부모를 존경했지만, 그 자신은 일생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케인스는 영국 명문 사립 고등학교인 이튼스쿨(Eton School)을 거쳐 1902년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교수였던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이 경제학을 전공하기를 권했지만, 케인스는 수학을 공부했고 주요 관심 분야는 철학과 윤리학이었다. 케인스는 대학 재학 시기 동안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G.E. Moore) 등과 같은 우수한 학생들의 비밀 모임이었던 '케임브리지 사도들(The Cambridge Apostles)'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케인스는 1904년 수학 전공의 최우수 학생으로 학사(BA) 학위를 받고 졸업했고, 졸업 이후에도 한 학기 동안 대학원 학생으로 경제학과 철학 강의를 들으며 경제·사회문제 토론에 참석했다.

케인스의 공직자로서 첫 번째 생활은 1906년 영국 인도청(India Office) 근무로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인도청 근무가 매우 지루하고 보람이 없어서 1908년 사직하고 케임브리지로 돌아와서 학

“

케인스 이후

현대 거시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거시이론을 활용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재정학은 새롭게 진화했다.

케인스는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부족한 시기에 실업과

불황이 발생하는데,

경제 불황의 극복을 위해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다.

”

물이론과 경제학을 연구했다. 피구(Arthur Pigou)의 개인적인 재정지원으로 강사료를 받으며, 케인스는 1909년 킹스 칼리지의 교수가 됐고 경제학을 더욱 깊게 연구했다. 그리고 케인스는 1911년 마셜의 후원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이코노믹 저널(Economic Journal)' 공동 편집자로 임명됐고, 경제학에 관련된 저술과 연구 논문을 썼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정부는 케인스의 전문성을 인정했고, 1915년 재무성 관리로 임명했다. 케인스의 역할은 영국과 유럽 대륙 연합국가 간 신용 대부 거래 조건의 설계와 유동성의 확보 문제였다. 케인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9년에 재무성의 금융대표로 베르사유 평화협정 회담(Versailles Peace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때 케인스의 주요 관심은 패전국 독일의 전쟁배상금이 과도하게 높지 않게 책정되어 독일 경제의 부담과 국민의 희생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케인스의 계획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

고, 독일은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부담했다. 그는 파리 평화협정의 부정적 효과를 서술한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을 1919년 발간했고, 이 저서는 영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대불황 시기에 케인스는 <화폐론(Treatise on Money 1930)>과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n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을 출간했고, 이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케인스는 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0년 영국 재무성의 자문위원에 다시 임명됐고 미국으로부터 차입과 전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다. 케인스는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브레튼 우드 체제(Bretton Woods) 출범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건강 악화와 심장발작으로 1946년 4월 62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했다.

대불황과 케인스의 ‘일반이론’

케인스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쟁적 자유시장경제가 장기적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신봉했다. 1930년 대공황 시기에 케인스는 기존 전통적 고전파 경제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총수요가 경제 활동 전반을 결정하며 총수요의 부족이 대량 실업과 불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케인스는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효수요 확대와 재정지출 증대, 투자의 사회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했다.

케인스는 불후의 걸작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n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1936년 2월에 출간했다. 이 저서는 경제학 역사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 경제이론과 경제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케인스 저서 이후 현대 거시경제학이 새롭게



정립되었고 경제학 패러다임 대전환인 케인스 혁명(Keynesian Revolution)이 일어났다.

케인스는 그의 저서 서문과 1장에서 과거 100여 년 동안 지속된 고전파 경제학이 19세기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 이론이며,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앨프레드 마셜, 아서 세실 피구까지 이어진 고전파 이론은 시장균형을 가정한 비현실적 이론이고 경제사회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인스는 고전파 이론의 가정이 비현실적이고 현실의 경험적 사실을 왜곡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저서가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그의 저서에서 재정이론과 관련하여 유효수요 이론, 승수효과, 투자의 사회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서술했다. 케인스는 〈일반이론〉 3장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에 대해 설명했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려는 욕구이다. 고전파 이론과 달리, 케인스는 유효수요가 총수요함수와 총공급함수의 교차점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케인스는 총공급함수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예상되는 기대 수익에 의해 결정되며, 총수요함수는 노동자의 고용으로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나타낸다고 했다. 케인스는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으면 실업과 불황이 발생하는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개입과 재정지출 확대로 유효수요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일반이론〉 10장에서 재정이론의 핵심인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대해 서술했다. 케인스의 승수 이론은 그의 제자이었던 리처드 칸(R.F. Kahn)이 1931년 6월 이코노믹 저널(Economic Journal)에 발표했던 것이다. 원래 칸의 고용승수는 투자 증가와 고용량 증가의 비율을 측정

하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케인스는 칸의 모형을 투자승수로 변화시켜 투자 증가와 총산출량 증가의 비율을 측정하는 승수 이론으로 활용했고, 투자승수는 한계소비성향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투자승수는 더 커지는데 승수가 클수록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총고용과 총산출량은 더 많이 증가하며, 승수가 2.5 수준의 안정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그의 저서 20장 결론에서 일반이론의 미래와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에 대해 썼다. 그는 경제사회의 가장 큰 결점이 완전고용 달성의 실패와 이로 인한 부,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라고 했다. 케인스는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통화정책은 최적의 투자와 유효수요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했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라고 확신했다. 케인스는 고전파 이론에서 가정했던 전통적인 정부 역할보다 재정기능이 더욱 크게 확대되어야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케인스의 재정이론

Anglo-Saxon 국가에서 애덤 스미스 이후 존 스튜어트 밀까지 이어진 고전파 재정 사상은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작은 정부론이었다. 또한 신고전파 경제학자인 앨프레드 마셜과 아서 세실 피구의 재정이론도 정부지출 이론은 빈약한 가운데 세입 측면인 조세 원칙론, 조세의 유형, 조세의 경제적 효과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 이러한 고전파 재정 이론에서 정부지출 이론의 취약성은 1930년 대불황을 경험하며 고전파 경제학의 위기를 맞이했다. 케인스 경제학(Keynesian Economics) 이후 재정이론은 거시재정정책이 국민소득, 고용, 물가

에 미친 효과의 연구로 전환되었다. 케인스 이후 현대거시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거시적 이론의 분석 방법을 활용한 보정적 재정정책(Compensatory Fiscal Policy)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재정학은 새롭게 진화됐다. 고전파 경제학은 최소한 재정지출 규모를 강조했으나, 케인스 이후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인 성장과 특히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주요 연구 주제로 되었다. 케인스 재정이론 이후 예산정책의 경제안정 기능이 중요한 역할로 부각됐고, 재정학은 전통적인 미시경제학 분야가 아니고 새로운 거시경제학의 논제로 진화됐다.

케인스는 1930년 대불황 시기에 영국 정부의 재정 긴축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불황기의 재정적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대불황이 극심했던 1933년 〈번영을 위한 방법(The Means to Prosperity)〉이라는 작은 책자를 펴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불황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반경기적 확대 재정지출(Counter-cyclical Public Spending) 정책을 제안했다. 케인스는 차입을 통한 재정지출(Loan Expenditure)로 주택, 교통시설 등과 같은 자본적 지출의 확대가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대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작은 책자에서 처음으로 승수효과를 소개했다. 케인스의 대불황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은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서술했지만, 그의 저서는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에게도 전달됐다.

케인스의 대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이론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앨빈 한센(Alvin Hansen)으로 이어져 1930년대 후반 재정정책 세미나(Fiscal Policy Seminar)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됐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시기에 영국은 케인

스의 영향을 받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1944)〉를 발간했고, 거시 재정정책과 완전고용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미국도 1946년 ‘고용법(Employment Act)’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로 완전고용, 생산, 구매력 유지의 책임을 공표했다.

케인스 재정이론의 논쟁

1930년 후반 이후 케인스 이론은 현대 거시경제학의 주류경제학이 됐다. 존 히크스(John Hicks)는 케인스 이론을 재해석하고 수학적 모형으로 발전시켜 IS-LM 모형을 개발했다.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은 1939년 논문에서 투자-가속도 원리를 고안하여 투자증대가 소득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 신고전파 통합의 시각에서 그의 저서 〈경제학(Economics)〉을 서술했다. 1960년 이후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서구 국가들은 단기적 재정정책의 적절한 시행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경험하며 케인스 경제학의 전성기(The Heyday of Keynesian Economics)를 누렸다. 닉슨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라고 했다.

그러나 1973년과 1979년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으로 케인스 경제학은 위기를 맞이했다.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을 발표하면서, 케인스가 주장한 정부 개입 확대는 국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경고했다. 또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케인스 확대 재정정책의 무효성을 비판했고, 통화주의자(Monetarist)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케인스 경제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나라재정> 10월호에 소개될 공공선택론을 정립한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케인스 경제이론인 확대 재정정책이 정부의 비대화와 리바이어던 정부(Leviathan Government)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뷰캐넌과 공공선택론자들은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한 정부 개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실패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케인스 경제학은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73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많은 도전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케인스 경제학은 부활(Keynesian Resurgence)했고, 케인스 재정이론은 현대 경제학의 주요 논제가 됐다.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10여 년 동안 장기 불황, 실업, 분배 악화와 같은 어려운 경제 현상을 경험했고,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또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염병 전파와 경제 붕괴 현상으로 전 세계는 1930년대 대불황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경제 위기론도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이며 뉴욕시립대학교 교수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2008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케인스 정책의 부활을 주장했다. 또한 2020년 크루그먼은 불황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재정을 통한 영구 부양’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장했다. 또한 케인스주의적 사고를 지닌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과 확대 재정정책의 실시를 제안했다. 1930년 대불황 시기에 등장했던 케인스 경제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난 2020년 이후 부활했다.

Fiscal Calendar



January 01

재정

- ▶ 2023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 2021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 통계청 2021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 2021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 2021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March 03

재정

- ▶ 2023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July 07

재정

- ▶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 통계청 2022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August 08

재정

- ▶ 20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 통계청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재정

- ▶ 2023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기획재정부, 6.16.)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경제운용 목표로 설정
 -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삼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추진
 - 4대 정책방향과 2개 당면 현안별 세부 이행 과제 제시
- 정책방향 (1) 민간중심 역동경제
 - 규제 혁파·기업활력 제고,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중소·벤처 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책방향 (2) 체질개선 도약경제
 -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금융 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 정책방향 (3) 미래 대비 선도경제
 - 과학기술·R&D 혁신, 첨단 전략산업 육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정책방향 (4) 함께 가는 행복경제

-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지역균형 발전

- 현안 대응 (1) 민생안정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주거안정
- 현안 대응 (2) 리스크 관리
 - 경제안보 대응, 위기관리 강화

2022년 5월 고용동향 분석 발표(기획재정부)

- 5월 고용은 코로나19 일상회복(4.18~)에 따른 서비스업(운수 창고, 숙박음식 등) 회복 등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취업자 수 +93.5만명 증가
- 다만 직접일자리, 2월 이후 일시적 방역인력 증가영향 등 공공, 준공공 부문의 영향이 상당하고 지방선거 등 특이요인도 존재
- 또한 고령층 중심 증가, 단시간 근로 등 세부분야별 취약점은 여전

April

04

재정

- ▶ 2021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 2021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국제

-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 2023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 2021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 2021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 2021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 통계청 202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 통계청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 한국은행 2022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 기획재정부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October

10

국제

-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 통계청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 2023년 예산 확정

경제

-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 한국은행 2022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재정데이터 공개

상세한 재정자료가 필요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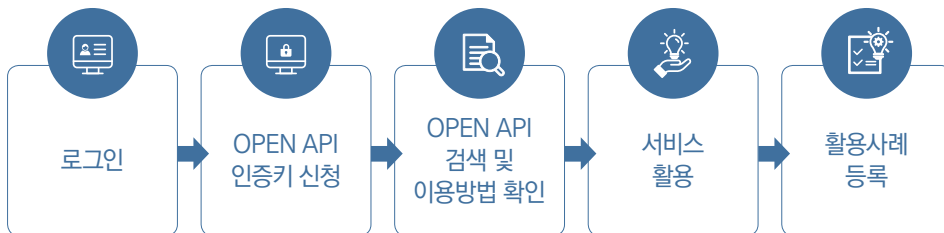
열린재정, 전문가 및 연구자에게 필요한 재정자료 제공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에서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OPEN API 인증 이용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웹 또는 모바일앱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열린 재정 OPEN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인증키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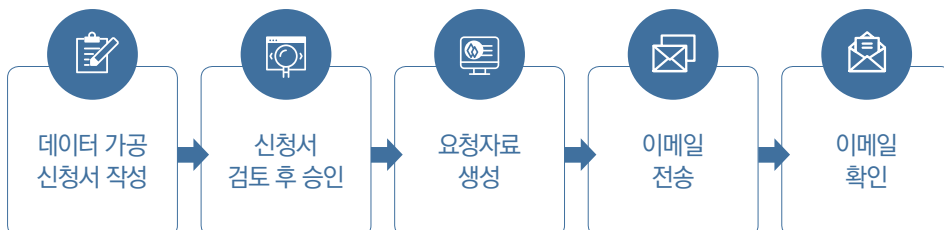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데이터 공개 → OPEN API → 인증키 신청(최초 1회만 신청)



② 재정데이터 신청

열린재정에서 데이터 가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가공 요청은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메일로 제공합니다(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데이터 신청 → 데이터 가공 요청



2022년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재정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성화와 신규 데이터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 간 2022년 7월 1일 ~ 7월 22일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목 적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
수요 및 이용 만족도 조사

문 의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정보분석부
opendata@kpfis.or.kr

대 상 한국재정정보원 공공데이터를
이용 및 활용하는 모든 국민

링 크 forms.gle/IyMseCLWHHnWZhgD6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QUIZ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과 같이 국가가 그 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모든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가 국가목적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일컫는 말은?

답

--	--	--	--

독자편지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mec***** 

저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보훈대상자시라 보훈대상자의 보훈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소개한 코너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보훈대상자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특성상,

이렇게 지면으로 정보를 홍보하는 잡지가

지금까지도 매우 효과적인 정보전달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2. 7. 5. ~ 2022. 7. 1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 | | |
|------------------------|------------------------|
| • ksj*****@gmail.com | • 885*****@naver.com |
| • see*****@naver.com | • mec*****@naver.com |
| • lov*****@naver.com | • pjh*****@gmail.com |
| • yny*****@hanmail.net | • 372*****@naver.com |
| • mot***@daum.net | • wcr*****@hanmail.net |



한국소아암재단

매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새 생명을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고민잡아,
다 잘될 거야!
덕분에,
오늘 이식을 받아요.



(재)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 02-3675-1145~6

이 메 일 : soaam9191@naver.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0401-04-025956

(재)한국소아암재단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소아암재단 무료 광고입니다.